

유.무선중계기국 주파수 배정표

		433.500 – 433.980(MHz)		1. 차 배정	2. 차 배정	
순		1차	2차	지역명	주 배분 지역	예비배분지역
1	1	433.500		포항	5 지역	
2	2	433.520		안동지부	경남(부산 울산 포항), 경북(대구 구미 울릉도)	2차 1 지역 배분
3	3	433.540		청송지부		
4	4	433.560				
5	5	433.580			5 지역 예비 주파수	
6	1	433.600				
7	2	433.620				
8	3	433.640			4 지역	
9	4	433.660			전남(광주), 전북, 제주도	2차 2 지역 배분
10	5	433.680				
11	1	433.700		충북본부	4 지역 예비주파수	
12	2	433.720				
13	3	433.740				
14	4	433.760				
15	5	433.780			3 지역 예비주파수	
16	1	433.800		강원본부		
17	2	433.820		횡성지부	2 지역	
18	3	433.840		원주지부	강원, 경기(인천 부천)	2차 4 지역 배분
19	4	433.860		홍천지부		
20	5	433.880			2 지역 예비주파수	
21	1	433.900				
22	2	433.920				
23	3	433.940			1 지역	
24	4	433.960			서울특별시 전역	2차 5 지역 배분
25	5	433.980			1 지역 예비주파수	

- 모든 중계기는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연맹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.
- 컴퓨터와 무선국을 결합 연결(일명:에코링크)하여 무선국을 운용하는 행위는 무단 중계기국 개설 운용에 해당됨으로 전파법 위반이다.
- 전파법에 의하여 연맹에서만 긴급재난통신을 위하여 유.무선중계기국을 개설할 수 있다.
- 유.무선중계기국의 주파수는 상기 주파수 배정표에 의하여 제1차 배정주파수로 배정하고, 제2차 배정 주파수는 그 다음에 사용하며, 예비주파수는 각 지역별로 예비로 둔다.
- 유.무선중계기국의 허가는 전파법 및 무선국관리규정 그리고 유.무선중계기국 관리규정에 의하여 허가 운용 및 관리한다. (2012.11월)

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중계기위원회